

24. 직원비율

병원은 환자 250인당 다음과 같은 최소직원수를 채워야 한다(p. 9 표 참조).

IV. 개별치료계획

25. 환자들은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포괄적인 신체 및 정신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행동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

26. 환자들은 개별화된 치료계획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은 정신과의사를 포함한 정신보건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데 계획완료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즉 환자의 입원 후 5일 이내 시행되어야 한다. 개별적 치료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a. 환자의 특정한 문제나 욕구에 대한 문구
- b. 입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환경의 최소한의 규제에 대한 문구
- c. 중-장기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 d. 중-장기 치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료계획의 근거
- e. 치료목표 달성을 위한 담당 직원의 의무 명시
- f. 퇴원이나 덜 구속적인 치료조건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 g. 18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환자가 수행해야 할 치료적 과업이나 노동에 대한 표시.

27. 치료계획의 일부로 각 환자는 개별화된 퇴원후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 계획은 정신보건전문가에 의해 개발된다.

28. 보호의 지속성을 위해 가능할 때마다 정신보건전문가가 치료계획 수행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29. 치료계획은 정신보건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한다. 모든 환자는 최소한 90일마다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료계획도 검토받아야 한다.

30.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외에도 정신병원의 환자들은 신체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1. 환자기록은 병동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환자에 의해 허락된 개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개인증명자료, 환자력(가족사항, 교육배경, 고용기록 포함), 환자력 외의 기타 신체 및 정신질환 등), 환자와 환자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주된 문제, 질병발생에 관한 평가, 입원으로 이끈 환경, 태도, 행동, 지적 기능, 기억력 등, 신체검사내용, 개별치료계획사본, 정신보건전문가의 검토에 따른 주요발견사항요약, 퇴원 후 계획사본, 투약력, 정신보건전문가와의 진료내용 및 진단내용, 환자의 활동범위와 특성 등...

32. 위의 모든 기준을 따르는 것 외에 병원은 아동 및 청년환자에 대한 특별 치료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33. 환자가 입원한지 15일 이내 병원의 감독자는 환자를 평가하고 입원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26번 기준이 지켜졌는지도 조사한다. 환자가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또는 치료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는 한 바로 퇴원시켜야 한다.

34. 정신건강국은 전환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비자발적 입원을 거친 환자의 퇴원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V. 기타

35.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 후견인, 친구들은 환자의 입원에 대한 고지를 즉시 받을 수 있다.

부 록 II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제정 2004. 8.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게 있어 생활 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정상생활에 필요한 일의 모두 혹은 일부를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 “특정권리”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시설로써 장애인이 장·단기간 주거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본 규정에 의한 교남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말한다.

2.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천원칙)

본 규정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듯이 모든 이와 함께 생활할 권리 갖는 것으로 특히 다음 각 호의 실천원칙을 이해하고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수한 권리의 인정
- 이 특수한 권리와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한 존중
- 장애를 가진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동등한 모든 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 동 규정은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것일 뿐 완전한 이상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호의 내용에 어긋나는 침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제5조(인권보장위원회)

- 교남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장 직속으로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항의 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 2 장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6조(인권침해예방의 범주)

본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2.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제7조(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① 본 규정에서의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라 함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국제연합(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2. 개인물품 관리 보장
3.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4. 종교생활의 보장
5. 성생활의 보장
6. 식생활의 보장
7. 프로그램의 참여 등
8.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9. 기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제8조(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① 본 규정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라 함은 당사자의 사회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를 말하며, 이는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2. 교육 및 학습 보장
3.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4. 선거 및 참정 보장
5.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6.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7. 기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제 3 장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제 1 절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제9조(목적)

장애인의 자기관리 및 개인위생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개인별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케 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권익 보호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의복의 선택)

1. 장애인은 각자의 연령과 취향, 욕구에 따라 자신의 치수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상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구입하도록 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선택·구입을 하되, 담당직원의 임의대로 구입할 수 없다.

② (의복의 착·탈)

1. 장애인의 의복의 착·탈 시에는 그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의복을 빌려 입는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착의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도록 한다.
3. 중증 장애인의 의복 착·탈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성의 직원이 보조를 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의복 보관 및 정리정돈)

1. 장애인의 개인적 의복은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별 옷장에 보관되도록 한다.
2. 장애인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담당직원이 장애인의 의복 정리 지원 및 의복 폐기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획일적 의복 착용의 제한)

1. 시설 내·외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한다. 다만 캠프 및 체육대회 등 단합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특성상 동일한 종류·색상의 의복이 후원되었다 하여도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여서는 안되며, 시설장애인의 정원 중 1/10 이상이 동일 의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이·미용)

1. 장애인은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이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설 내에서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머리스타일을 되지 않아야 한다.

3. 장애인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헤어 젤, 빗, 밴드 등의 머리손질도구를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다.

⑥ (화장)

1. 장애인은 각자의 성별·연령과 취향, 피부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선택한 화장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⑦ (화장실 이용)

1. 장애인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도 안된다.

2. 화장실은 사적공간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⑧ (목욕)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인의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목욕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일상 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개별화하고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11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피복비는 반드시 장애인의 피복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 및 물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개별 의류 보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세식 변기로써 여자용은 10인당 변기 2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목욕탕 및 화장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시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

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2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그에 따른 설명과 동의를 최대한 얻어야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2 절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

제13조(목적)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소유권 박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개별적인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인물품의 범위) 개인물품의 범위는 화장품, 세면도구, 앨범, 의류 등의 개인생활용품 외에 본인이 선물로 받은 물품, 장신구, 책 등 장애인이 개인적인 물품이라고 여기는 모든 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피복	의류, 속옷, 신발 등
장신구	머리핀, 지갑, 허리띠, 액세서리, 개인거울 등
화장품류	파우더, 기초화장품, 립스틱 등
가전제품류	카세트, 이어폰, 핸드폰, 컴퓨터, CD플레이어 등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품류	상장, 앨범, 사진 등
교재류	잡지책, 학습지, 각종 책 등
세면도구류	칫솔, 치약, 수건 등
취미관련 물품류	개인적 취미활동 물품 예) 십자수관련용품 등
침구류	베개, 이불 등
선물받은 물품	액자, 음악 테이프 등
기타	개인적인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각종 물품

② (개인물품의 구입)

- 장애인은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취향 및 욕구에 따라 스스로 구입하도록 한다.
- 기관에서 제공되는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의 구입은 장애인의 개인적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비용으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소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개인물품으로 간주도록 한다.
- 전 호에 의해 장애인이 개인물품의 구입을 위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은 장애인의 동의를 얻은 후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개인물품의 보관)

- 장애인은 개인의 물품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 개인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은 시건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에 따른 열쇠의 보관도 장애인이 하도록 한다.
- 중증장애인으로 개인물품의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한 해당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기관의 역할)

-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개인물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건장치를 최대한 개별적으로 확보·비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에 대한 기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6조(직원의 역할)

-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관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동의 및 의사에 반하여 개인물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3 절 주거생활 (주거환경 및 공간배치) 보장

제17조(목적)

장애인의 주거생활 보장이라 함은 과거 생활시설의 특성상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마련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주거환경의 조성)

- 장애인은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구조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성별에 맞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은 실내 환경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커튼, 침대 커버, 조명 등 실내 장식의 주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
- 장애인은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주거환경은 최대한의 미적조화를 달성해야 한다.

② (숙소 배치)

- 장애인은 본인의 숙소 배치를 위한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의사소통이 힘들고 중증인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평상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타 장애인과의 상호관계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 장애인의 거주하는 숙소의 인원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숙소 내에 본인의 사적물을 비치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 장애인은 본인의 생활공간이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시숙소 배치)

- 장애인이 본원에 신규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임시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 임시숙소의 배치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의 기본적인 습관 및 태도, 능력 등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함이므로 관찰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숙소를 배치하여야 한

다.

제19조(기관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시설 내·외적으로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애인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을 변화·발전시켜야 한다.
 3. 기관은 장애인의 생활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추구하여야 한다.
 4. 주거환경과 관련되어 외부의 후원물품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장애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0조(직원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당직원이 임의로 장애인의 숙소를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의 생활공간 내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공간배치 및 환경미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주거공간을 불특정인에게 개방하여서는 안되며,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4 절 종교생활의 보장

제21조(목적)

장애인의 종교생활 보장이라 함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리가 생활시설의 장애인에게도 보장됨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다.

제2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의 종교 선택)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종교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택된 종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장애인의 종교 활동)

1. 장애인은 본인이 선택한 종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23조(기관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신규입소 및 이용자에게 본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관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종교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기관의 종교이념에 맞지 않는 타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4조(직원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5 절 성생활 보장

제25조(목적)

장애인의 성생활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같이 동일한 성적 권리와 가지

며 스스로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6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장애인은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은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직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성교육용 자재 구입 및 교육용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8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에 대한 상담과 교육시 담당직원은 너그러운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장애인의 성적 행동에 대하여 담당직원은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한다.
3. 장애인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하며 성교육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9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성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성적 욕구나 표현이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2. 낙태 또는 불임시술과 같이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30조(제한범위의 절차)

①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담당직원이 성생활의 제한에 대한 사유 및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2. 위원회에서는 부모, 관련자원,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의 의견 취합 및 사실조사
3.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동의
4.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지도방침 및 대응책 제시·시행

②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연고자 등 당사자에 의한 요청
2. 위원회에서 관련자원,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3. 장애인 및 연고자의 최종 결정

제 6 절 식생활 보장

제31조(목적)

장애인의 식생활 보장이라 함은 시설에서 제공되어지는 식단 및 간식에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단체급식에 있어서의 보장)
 1. 장애인은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의 보장을 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영양사는 단체급식의 식단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3.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매 끼니마다 정기적으로 4찬 이상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선호음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인이 선호 음식에 대해 추가 욕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5. 단체식의 배식 또는 섭식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식의 보장)

1. 장애인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거공간에서 자유로운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동 항을 보장하는 방법은 위 제1항의 방법과 같다.

③ (보조기구 및 환경의 지원)

1. 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의 식사환경은 최대한 쾌적하며, 식사를 하기 쉬운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간식의 선택·결정)

1. 장애인은 주식 이외의 간식에 있어 본인의 기호식품 및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은 기관의 간식비 또는 개인용돈을 사용하여 스스로 구입·섭취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간식의 종류와 시간을 가능한 한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기관의 집단적인 간식 지급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제33조(기관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식사 및 간식지급에 있어서 최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기관은 최대한 일반화된 식기나 가정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부에서 보조되는 주·부식비 및 간식비는 반드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의 상향 배정을 위해 외부 후원금이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4조(직원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담당직원은 평상시 장애인의 식습관을 관찰하여 개인별 선호 음식을 올바르게 조사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음식 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건강상의 위험으로 인해 간호사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7 절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

제35조(목적)

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과 시설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장애인이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결정권과 재활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6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1. 장애인은 본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의료재활 등)에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은 본원에 입소한 이후 통합재활계획 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수립회의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재활계획 수립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1. 장애인은 기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은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각종 편의용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1.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에 있어 본인의 욕구 및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3.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다.

제37조(기관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

당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장애인의 개별적 통합재활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애인의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가급적 장애인이 통합적 지역사회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8조(직원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 자원봉사자와의 활동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사전 교육하고 보호차원의 활동보다는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외부활동 참여에 따라 장애인의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한의 관찰을 통하여 욕구를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9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언어치료, 심리치료, 수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수립된 경우
2. 장애인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어려운 경우

제40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합적 재활계획수립회의 및 사례회의 실시
2. 회의록에 따른 결정사항의 장애인 동의

3. 기관장 결재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 수립

제 8 절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제41조(목적)

장애인은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더구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장애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3.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장애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애인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2.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장애인을 방치·유기하는 경우
 3.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4. 기타 장애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제43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2.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장애인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4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자선적 시혜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 모색 및 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사적감정 배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5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4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신체자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해 일정기간 신체적인 제약을 실시하는 경우
2. 전문가의 개입과정에 따른 재활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진행되는 경우

제46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신체자유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재활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장애인의 동의 및 사실전달
3. 해당 장애인을 위해 2인 이상의 담당자를 임시 선정하고 그중 한명은 감독자의 직위를 선정
4.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원상회복
5. 기간중 수시로 제약 이외의 사항이 침해되지는 확인

제 4 장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제 1 절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제47조(목적)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라 함은 성인기에 도달한 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갖춤으로써 온전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48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업선택의 자유)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직업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장애인은 직업능력평가 및 상담을 통해 본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② (직업전 준비훈련의 참여 보장)

1.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직업전준비훈련이라 함은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활동훈련 등 직업생활에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훈련을 말하며, 이러한 훈련을 지원받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없다.
3. 장애인은 직업교육을 위한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직업생활 유지)

1. 장애인은 직업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불편없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은 취업업체와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 있어 스스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을 대변자로 선임·지원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의 급여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급여액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49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에 필요한 업체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기관에서는 직업훈련교사 및 상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교육 및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기관의 방향성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소득액은 전액 장애인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0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담당직원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담인·대변인·중재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선택·훈련·유지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급여 관리와 관련되어 담당직원은 객관적이고 증빙가능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2 절 교육 및 학습보장

제51조(목적)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권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의 교육·학습 받을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보장하여야 함을 말한다.

제52조(권리보장의 영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학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은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교육기회도 부여되어야 한다.
- ② 장애인은 동일 연령대의 또래집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은 본인의 능력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식의 지원받을 수 있다.
- ④ 장애인은 교육기관의 접근을 위한 각종 수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3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연령별·학력별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2. 장애인의 교육·학습에 대한 욕구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합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4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능력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2. 장애인의 교육적 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 개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합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5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5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교육·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도저히 교육·학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6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교육·학습권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재활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장애인 및 연고자에 대한 사실전달과 동의
3. 해당 장애인의 최소한의 신변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계획 수립·지원
4. 매년 1회 이상 교육 진행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실시
5. 제55조에 의한 침해사유의 종료시 즉시 원상회복

제 3 절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제57조(목적)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적서비스를 명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58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공적 수급비용의 보장)

1.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의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으로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은 본인에게 지원되는 공적 수급비용에 대하여 본인의 재활·치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은 생활시설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인으로써 보장되는 공적 서비스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즉 이동비용·의료비용·양육비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장구 사용의 보장)

1.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를 지원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은 보장구의 활용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3. 장애인은 보장구 사용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우미 지원 보장)

1.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도우미는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유급활동가 등을 모두 포함하며, 활용에 따른 비용은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9조(기관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2. 장애인에 지원되는 공적수급비용의 철저한 관리 및 집행
 3.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최대한의 비용 지급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0조(직원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2.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방법 및 지도안 작성 공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4 절 선거 및 참정 보장

제61조(목적)

장애인의 선거 및 참정권의 보장이라 함은 생활시설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을 말하며, 시설에서는 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제6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선거정보 접근 보장)

1. 장애인은 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이 보장된다.
2. 장애인은 정보접근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용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의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

② (투표권 행사 보장)

1. 장애인은 선거법에 따른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일지라도 본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특정인을 지정받아서는 안된다.

제63조(기관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선거법 및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따른 공정한 선거 진행
 2. 선거 및 참정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의 보급 등 조치
 3.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선거 교육 실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4조(직원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능력에 따른 올바른 선거 교육 실시
2. 선거와 관련된 중립성 확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합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5 절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제65조(목적)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에 있어 정보이용이라 함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접근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거주이주권 등 시공을 초월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말한다.

제66조(권리보장의 영역)

-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정보이용의 보장)
 1. 장애인은 어떠한 제한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기관 내에 설치된 컴퓨터, 전화 등 정보매체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동·접근의 보장)

1. 장애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운영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은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7조(기관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이동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운영

2. 장애인의 이동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수단 확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8조(직원의 역할)

- ①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정보 및 복지시책, 서비스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공개 열람
 2. 장애인의 이동접근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으로써의 제 역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6 절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보장

제69조(목적)

장애인의 사회생활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과 장애인 간에, 장애인과 직원 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70조(권리보장의 영역)

-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관계)
 1. 장애인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대우와 역할을 행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과 직원 간의 관계)
 1. 직원과 장애인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솔직함, 성실, 진심 등에 의해 특징지워져야 한다.
 2. 장애인과 직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별도의 식사나 식사 공간, 특정한 용어의 사용, 유니폼 착용 등과 같이 상대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 ③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관계)
 1.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관계에 있어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관계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상호 존중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와 밖에서 자유로이 외부인과 만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4. 외부방문자는 자유로이 입소 장애인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공간 및 비용지원)

1. 장애인은 개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더라도 외부사람의 방문시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장애인이 대인관계 유지 및 지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장애인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경우 본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초청을 원할 때에도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71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원, 대중들과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이 되도록 최대한의 방향 설정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각종 보장구 지원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개방화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이 또래의 비장애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생활 증진을 위한 제비용을 가급적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72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장애인들이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장애인들 간의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5 장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제73조(인권상황조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권 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교육강화)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본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75조(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행복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펼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본원 홈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글을 상주시키거나 홈페이지 내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을 따로 마련하여 인식개선의 장으로 삼는다.

2. 본원의 부지 입구, 각 기관의 출입구, 식당, 회의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띠는 장소를 물색하여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한다.

3. 책상용 또는 차량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부착한다.

4. 후원자(단체)의 교육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을 위한 인권 자료 준비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76조(연구모임 운영)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을 유도·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직 설립을 유도·지원한다.

2. 다른 기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3.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발표회를 개최한다.
4. 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식을 공유한다.

제 6 장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제77조(사실의 인지)

-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사실조사)

- ① 제73조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 및 제77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별지 1호」의 “장애인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보고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위원회의 결정·조치)

-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원 내와 본원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본원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본원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 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80조(소속기관의 징계조치)

- 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에서는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남장애인재산권보장규정

2004. 9.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게 있어 재산의 수익·관리·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이념)

본 규정에 의한 교남장애인의 재산권 보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이념을 추구한다.

1.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성 :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의해 공공필요를 위하여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재산권의 보장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재산권을 박탈당하거나 임의로 기존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3. 재산권 보장의 평등 :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 이상, 재산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므로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2. '재산권의 보장'이라 함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보장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 ① 교남 장애인의 재산권 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장 직속으로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재산의 수입 및 관리

제5조 (시설장애인의 재산 범위)

- ① 시설장애인의 재산은 장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유형·무형의 모든 재화를 말하며, 명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 소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애인의 개별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각종 예치금 (통장, 현금 등)
 2. 장애인의 의사와 비용으로 구입된 개인물품
 3. 개인의 소유가 명확한 유형의 물품
 4. 기타 해당 장애인의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

제6조(재산의 수입 경로)

교남장애인에 있어 재산상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① (후원금을 통한 수입)
 1. 결연후원자 및 개별적 후원자를 통해 후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개별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2. 후원자를 통해 해당 장애인의 개별적인 후원물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애인의 개별 소유로 관리토록 한다.
 3. 관련단체(한국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의 결연후원금의 경우에도 전호와 같다.
- ② (원가정에서의 수입)
 1. 시설거주장애인의 원가정 및 연고자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금전적·물질적 재화는 해당 장애인의 개별 소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③ (행정기관에서의 수입)
 1. 장애인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수급받는 각종 지원사항(시위문비 등)은 해당 장애인의 개별 소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행정기관에서의 수입에 있어 생활시설이라는 집단으로 수급되는 것 이외의 장애인 개개인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직업활동을 통한 수입)
 1. 장애인이 취업 등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재화는 해당 장애인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이 직업활동 중에 해당 업체·복지관에서 현물로 받는 물품도 해당 장애인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⑤ (기타 개인적인 재산)
 1. 금융기관의 예치를 통해 발생되는 각종 예금이자도 개인의 소유로 인정된다.
 2. 기타 임대차·상속·매매 등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이익도 개인의 소유로 인정된다.

제7조 (재산수입의 관리)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재산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담당직원이 이를 관리해 주도록 한다.
- ② 제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한 수입의 관리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후원금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소관부서(지원사업팀)에 관련정보를 전달하고, 년 2회 이상 해당 장애인이 감사서신을 작성·송부토록 한다.
 2. 급여 : 해당 장애인의 급여일 이후 5일 이내에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미입금시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토록 한다. 또한 해당 장애인의 급여명세서는 본인의 금전출납부에 보관·관리토록 한다.
 3. 행정기관 지원금 :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즉시 소관부서(행정관리팀)에서 장애인의 개별 통장에 입금토록 한다.

제8조 (재산의 관리)

- ① 장애인의 재산은 해당 장애인의 개별적인 명의로 선량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② 기관 및 직원은 장애인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장애인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 ③ 장애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다.

제9조 (재산관리의 위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또는 연고자는 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위임은 시설거주장애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능력·정도·특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재산관리의 위임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장애인은 소속기관의 기관장을 재산관리에 대한 대리인으로 선정한다.
 2. 기관장은 해당 장애인의 금전 및 개인용품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에 대하여 특정직원을 선임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해당 장애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에 의해 해당 장애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이 제한된다.
 1. 해당 장애인의 재산이 축소·처분·소비되는 경우
 2. 해당 장애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처분·임대하는 경우

제10조 (금융기관의 이용)

- ① 해당 장애인의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의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은 반드시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한다.
 2.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은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한 1인이 담당한다.
 3. 금융기관의 통장·도장은 해당 장애인이 보관토록 한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동의를 얻은 후, 담당직원이 보관할 수 있다.
 4. 현금의 입·출금은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실시되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11조 (금전의 적립)

- ① 기관은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장애인의 재산을 증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의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적립식 예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 ③ 예금의 적립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금액(50만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모두 적립예금으로 예치한다.
 2.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예금에 예치도록 한다.
 3. 적립예금의 입금은 장애인 및 담당직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4. 적립예금의 기간 및 금액 만료시에는 재차 타 적립예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12조 (적립통장의 관리)

- ① 적립예금의 통장은 기관내 별도의 담당자를 두어 관리한다.
- ② 관리되고 있는 예금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장사용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 ③ 적립통장의 입금을 위해서는 전항의 통장사용대장을 기재하고 해당 장애인 및 담당직원이 자 유롭게 할 수 있으나, 출금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적립예금의 인출)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예금의 인출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장애인의 적립예금의 기간 또는 적립금액 만료시
 2. 해당 장애인의 명확한 의사표명에 따른 중도 해약시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적립예금의 인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적립예금의 계약서 및 설명서 확인에 따른 만료 확인
2. 만료전 타 적립예금의 종류 및 금액 조사 실시
3. 해당 장애인 및 지정대리인의 금융기관 동행
4. 만료 인출과 동시에 타 적립예금으로의 예치
5. 신규 적립예금에 대한 기관장 확인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적립예금의 인출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해당 장애인의 중도 해약에 대한 의견 제시
2. 중도 해약에 대한 타당성·수익성·자의성 조사 및 그에 관한 장애인·연고자에 대한 의견 전달
3. 해당 장애인의 결정 및 의사표명서 작성 및 비치
4. 해당 장애인 및 지정대리인의 금융기관 동행
5. 중도 해약 금액을 해당 장애인에게 전달
6. 추후 중도해약사유 및 과정, 사용처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장애인 개별파일에 보관

제14조 (예금인출자의 지정)

-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적립통장 관리를 위해 소속직원 중 3인을 예금인 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예금인출자 3인은 각기 다른 직원이어야 하며, 이중 1인은 총괄책임자로써 비밀번호·통장사 용대장 관리, 1인은 도장 관리, 1인은 통장의 금고 관리를 담당도록 한다.
- ③ 예금인출자로 지정된 총괄책임자는 재산관리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예금인출자로 지정된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 예금인출자중 총괄책임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장애인의 적립통장 개설에 따른 대리인으로써의 역할
2. 해당 장애인의 적립통장 보관 및 통장사용대장 관리
3. 적립통장의 만료시 재가입에 따른 대리인으로써의 역할

제15조 (금전출납부 작성)

- ① 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위해 해당 장애인마다 개별적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금전출납부는 해당 장애인의 개별적인 모든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자 유 입출식 통장과 적립통장의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③ 금전출납부는 해당 장애인이 기록도록 하며, 장애정도에 따라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직원이 대리 기록할 수 있다.

④ 금전출납부의 보관은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직원이 일괄 보관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금전출납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기관내 소속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산의 활용 및 처분

제16조 (재산의 활용)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재산의 처분 범위)

- ① 재산이 있는 장애인은 그 재산의 활용 및 처분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1. 전세권 설정
 2. 재산상의 가감이 있는 증여·계약·매매·환매·교환·소비대차·임대차

제18조 (물건의 공유)

- ① 생활시설 거주로 인하여 특정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장애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이를 공유로 한다.
- ② 공유된 물건에 있어서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임의로 처분되어서는 안된다.
- ③ 공유 물건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부수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1. 공유 물건의 구입에 있어서는 관련 장애인 모두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얻도록 한다.
 2. 공유물건의 활용은 관련 장애인 동일하게 사용도록 한다.
 3. 공유물건의 처분에 있어서는 관련 장애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 한하고, 처분에 따른 이익도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체결)

- ① 장애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민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장애인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이 계약을 함에 있어 사실을 반영하도록 한다.

1. 계약 내용에 있어 일반적 관습 및 상거래와 합치되는지 여부 확인
 2. 계약 성립에 관한 장애인의 명확한 의사표현 확인
 3.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확인
 4. 계약 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익 또는 손실 여부 확인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절차는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1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 ①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장애인이 그룹홈 입주 등에 의해 주거공간을 변경하여 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수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는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한다.
 1. 해당 장애인의 주택 구입 및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에 대한 의사 확인
 2. 관련 부동산의 시세 및 등기부등본 확인·조사
 3. 관련 부동산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장애인의 동의·확인

제21조(금전대여 및 보증 등)

- ①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따라 금전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담당직원이 해당 장애인을 보조하여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금전 이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교사 및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유언)

- ① 장애인은 본인의 재산처분 등에 관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 ② 장애인이 유언을 하는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되, 기관에서는 다음의 부수적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유언의 의미와 방식, 효과에 대해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유언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내용이 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대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속)

- ① 장애인의 사망시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기관은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 규정에 의하

여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인 장애인의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일상적 소비활동의 지원)

- ① 장애인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금전에 관하여 자유롭게 소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기관 및 직원은 장애인의 개인별 소득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 ③ 제1항에 의한 일상적 소비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출구분	지출내용 및 항목	세부사항
개인지출	-개인에게 필요한 용품 (건강보조식품, 의복, 단행본, 신발 학습지, 버스카드 구 및 충전등)	-원에 의뢰한 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용 돈 지출
	-개인의 욕구에 따른 용품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한 금액을 적립시켜 구입
	-학교저축, 현금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지출
	-개인의 욕구에 의한 여가활동비	-운영계획서에 계획된 여가활동을 제외한 활동 지원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비	-정기적인 치료는 기관에서 부담
	-필요에 따른 주간학습지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지출
공동지출	-개인 방문선물비	-개인의 욕구에 의해 지출
	-담당교사 및 동료 생일선물비 -스승의날, 어버이날 선물비	-동료 생일선물비는 기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출

- ④ 전항의 규정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은 장애인의 정도·능력·연령 등을 고려한 지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참조)

제 4 장 재산권 침해예방 및 사후복구체계

제25조(장애인 재산조사)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재산 상황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사의 결과에 있어 장애인의 재산상의 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

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재산권 보장 교육)

①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장애인 재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27조(재산권보호 연구모임 운영)

①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을 유도·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직 설립을 유도·지원한다.
2. 다른 기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3.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발표회를 개최한다.
4. 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식을 공유한다.

제28조 (재산권 보장을 위한 기관의 역할)

장애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개인금전 및 통장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장애인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자신의 금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4. 적금통장 관리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직원의 역할)

장애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전출납부 작성, 은행이용 등의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3. 주1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해주되 필요한 물건 및 간식을 스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제30조(재산권 침해사실의 인지)

①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실조사)

①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산조사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장애인의 재산권 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재산권 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별지 3호의 “장애인 재산권 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보고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의 결정·조치)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장애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원 내와 본원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본원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본원 외는 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 관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재산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

야 한다.

제33조(소속기관의 징계조치)

- ① 장애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재산권 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에서는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부 록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 바 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엮고 펴낸 곳

공동대책위원회(준)

장애인우익문제연구소 (02-521-536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 덕승빌딩 7층 www.cowalk.or.kr

문 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9 3층 www.sarangbang.or.kr

펴낸 날

2004년 12월 8일

제2회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개 토론회

정가 5,000원

(이 책의 수익금은 시설생활자의 인권학보와 민주화를 위한 활동 기금으로 쓰입니다.)

<토론문 V>

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 해결의 출발점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 시작하며 : 시설의 사회적 역할

□ 일반적으로 시설의 역할을 “공적인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일부분으로 ①심신의 미발달, 미성숙 및 노화 또는 심신의 장애에 의한 결점(handicap) 등 타인에의 의존 없이는 자립생활이 곤란한 조건 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보호·양육해야 할 가족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현재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가족의 부양기능의 결여로 가족 내에서의 생활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②각종 장애(handicap) 등의 치료·보호에 가정 또는 가족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③경제적 곤궁에 의해 자립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치료, 재활상의 여러 가지 장애에 대응하여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권을 보장하는 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은 거주, 급식, 보건 기능 등의 생활서비스, 의료적 치료, 교육·훈련 서비스, 시설 이용 자와 그들의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조정의 기능 등의 원조서비스 등을 통해서 시설 이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인간적 성장·발달·치료·재활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

□ 하지만 현재 시설이 실제로 생활, 의료, 교육 등의 보장을 통해 이른바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곳인가 하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시설 조사를 하다보면 5년 이상, 심지어 20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시설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미루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시설 역할의 분석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소했는지, 왜 퇴소하지 않는지(또는 못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첫째, 이들의 입소는 대체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아동, 장애인, 부랑인 등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의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현황 조사>(2002)에 따르면 입소경위는 △정부기관의 의뢰(40%) △본인이 원한 경우(34%) △가족이 원해서(13%) △타시설, 기관으로부터의 이전(13%) 순으로 나타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한 입소가 대다수였다. 둘째, 이들의 퇴소는 본

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금지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살고싶냐는 질문에 대해 50.8%가 '그렇다'고 응답하면서도 퇴소할 계획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에 달했다. 즉 이들은 시설 생활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조사에서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가 95%에 달하는 것은 이들에게 시설 생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체념이 영향을 미친 것이겠다.)

□ 1980년대 들어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위원회에서는 '빈곤'이란 표현 대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 쓰임새가 퍼져나갔다. 이 개념은 빈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이 소득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 교육, 정보 등 다양한 자원에의 접근이 봉쇄된 '중첩적인 박탈'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빈곤 문제의一面에는 고용과 물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의사결정이나 정치 과정에의 참여 기회, 공동의 문화적 과정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 등 으로부터의 배제가 결합된 다차원적인 소외 과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은 이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의 마지막 집합소로 기능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감옥으로 간 사람들과 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운동은 시설 수용자 인권확보와 그와 연관되는 시설비리 척결을 목표로 해왔다. 수용자 인권확보의 세부내용을 따져보면 ①신체의 자유 침해(불법적인 구금,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동의 없는 불임시술, 강제 삭발, 강제투약), ②통신의 자유 침해(외부와의 편지, 전화, 면회 제한), ③종교의 자유 침해(종교 집회 강제 동원, 강제 안수·금식기도), ④사생활의 자유 침해(도청, 감시카메라 촬영), ⑤생존권의 침해(열악한 의식주, 의료서비스의 부재, 정벌목적으로 음식물 제공 제한 또는 금지, 살인, 암매장) 등에 대한 항의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척결해야 할 시설비리로 시설회계비리(국가보조금, 후원금, 보호비, 수급액 횡령), 법인을 담보로 한 부동산 투기, 노임 횡령 등을 지적해 왔다.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족벌운영체제와 외부 관리 감독(국가와 민간)의 부재³⁾를 꼽아왔다. 시설운동은 문제시설의 수용자 인권확보를 위한

1) 시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은 시설 수용자가 어떤 계층,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기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 다만 문제시설 조사 시 수용자와의 면담과정에서나 조사 후 '보호자'의 항의전화를 반다보면 "같이 살 수 없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궁핍 문제임을 체감할 수 있을 뿐이다.

2) 신명호, 한국사회 빈곤의 새로운 인식, 민중복지학교 자료집, 2002

3)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의 원조기관이 60년대 초반부터 철수하면서 그 운영권이 민간에게 이양되었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민간위탁구조는 공적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시설 운영을 여전히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민간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확립된 국가책임 최소주의를 바탕으로 보조금

방안으로 관리자 처벌과 시설폐쇄, 수용자 전워조치를 요구해왔다. 또 시설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으로 시설민주화(감사의 실질화, 이사진 퇴진, 관선이사 파견, 민주적 운영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왔다.

1.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 입퇴소의 자유 박탈

-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해 체포, 구속영장 발부, 유치장 유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범죄자들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이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모두진술, 최후진술과 사건에 대한 심리과정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결과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 그러나 시설 수용자들은 감옥에 수감되는 이들과는 달리 어떤 죄값을 치르기 위해 수용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치러야 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도 없이 오로지 각종 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서류상의 요건만 갖추어 지면 그만일 뿐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 역시 없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를 구속당하는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용된다. 각종의 수용시설과 관련된 입퇴소 심사는 매우 형식적이다.

□ 자유권 보장의 포기를 전제로 한 사회권 보장

-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용시설을 조사하다보면 시설관리자와 감독 행정기관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이야기가 시설 불가피론이다. 시설 불가피론의 핵심은 자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생존권을 보장해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자유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경제적인 의미의 생존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극단적이고 역설적이지만, 구걸하거나 짊어지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이들의 생존권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포기할 수 있어야 자신의 생존에 대한 권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 특히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곧 죽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자유권을 침해하는

횡령과 독단적 운영 등 구조적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것은 곧 인간다운 생존권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적 해결책의 방향

□ 발제자는 수용자 인권의 관점에 따른 복지시설의 원칙으로 △소규모화 △지역화 · 개방화 △인권보장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들었다. 또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으로 △시설 입퇴소권의 보장 △시설운영자 자격 제한 △임원 구성의 문제 △시설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원 △소규모 그룹홈의 확대 △민관 합동실태조사와 공정한 법집행 등을 들었다. 특히 수용요건의 강화와 불복절차의 도입 등 강제 수용 과정에 있어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한다. 이외 대부분은 관련 정책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국가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의 제개정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다만 개정방향에 두가지를 덧붙인다면:

○ 첫째, 수용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수용환경의 최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감옥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principle)’은 시설수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감옥에 갇힌 “범죄자의 처우는 감옥 밖 일반인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자의 처우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문제는 감옥 수용자도 하나의 인간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범죄 사실로 인해 일부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일 뿐인데도 감옥 내의 형편없는 처우와 각종 비인간적인 학대는 손쉽게 정당화되곤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최저선의 원칙’이다. 여기에는 감옥 내 처우의 신장은 감옥 밖 처우의 신장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 둘째,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시설에서의 인권문제는 시설 운영자와 수용자 간의 사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용시설 운영자와 수용자 간의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굳이 사회복지의 이념과 원리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여도 인신을 억압하여 장소의 이동을 불가능케 하는 수용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 법적인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공신력을 갖는 국가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도 그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민간에 그 책임

을 이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 수용자들의 생존권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셋째, 수용시설의 존재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므로 법제도의 변화도 탈시설의 전략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물론 문제시설 시설장의 퇴출과 수용자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처우개선과 시설민주화를 주장하는 관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해법들은 어디까지나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의 온존을 전제하고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본다. 장애인, 노숙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왜 수용하려는가? 그들을 누가 수용하려 하는가? 격리되어왔던—또는 언제든 격리될 수 있는—이들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설 수용자의 인권 확보는 시설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거듭되는 시설수용은 수용자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체념하게 만든다. 게다가 문제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무관심은 그 체념의 정도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입·퇴소의 자유보장을 위한 시설선택권을 지적한 발제자의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시설 수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선택권과 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입소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퇴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더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소통권(진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장기적으로 시설폐지의 과도기로 신규 수용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수용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 부랑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은 다소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철저하게 전문화해야 한다. 또 집중적인 요양과 훈련을 위해서 이용시설보다는 수용시설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등 수용형태에 따라 사정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문화된 대규모 시설은 국공립직영시설로 함이 마땅하다. 나머지 단순생활시설들은 대규모인 경우 인권침해나 비리 가능성, 사회와의 격리 등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므로, 지역 내의 중소 규모 시설이나 공동체 가정으로 전환됨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신규 수용시설은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수용시설의 수용인원도 축소해야 한다.